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20.4.14(화)
사업명/신청위치	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노원구 상계동 111-206번지 일대
의결번호	2020-4-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건축, 특별건축구역 지정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「건축법」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〈특별건축구역 지정〉

○ 「건축법」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

〈 건축 분야 〉

□ 건축계획

- 106동~108동, 113~115동의 브릿지로 연결된 세대 출입문 사이 거리는 2019.11.26. 제출되었던 계획안의 거리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 바람.
- 2-1-2획지 테라스 하우스 삭제 부분의 레벨을 최대한 낮추고, 새로이 설치 되는 옹벽은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자연석 쌓기 등으로 계획하여 위압감 완화 바람.
- 세대 발코니 코너 부분의 전용면적 산정 여부 확인 바람.
-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.

□ 건축구조

- 관련법령에 따라 2019.3.14. 개정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 확인 후 구조 설계 바람.
- 경사지에 형성되는 201동~207동의 아파트 구조계획은 설계시 지표면 레벨차이가 35m~40m정도 발생하여 편토압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우기시 낮은 레벨에 형성되는 지하층에 우수 및 유입수에 의한 부력으로 구조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 바람.
- 106동, 107동, 108동, 113동, 114동, 115동 등 듀얼타워 형식으로 형성되는 주동을 연결하는 브릿지 계획시 각 브릿지의 양단부에 기둥을 설치 하고,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릿지의 양단부에 EJ설치 계획 검토 바람. - 계속 -

2020.4.14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20.4.14(화)
사업명/신청위치	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노원구 상계동 111-206번지 일대
의결번호	2020-4-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, 특별건축구역 지정

〈 공통사항 〉

- 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
 - 가. 녹색건축인증 : 주거-우수(그린1)등급, 비주거-우수(그린2)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: 주거-1+등급. 비주거- 1등급
 - 나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
 - 주거 10.79% 적용(태양광(PV) 232.18kW, 태양광(BIPV)523,74kW, 지열 1,305kW)
 - 비주거 10.15%적용(연료전지 25kW)
- 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
- 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 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
- 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"불필요한 시설"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- 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,000 m²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 m²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
- 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20.4.14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